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7

발의연월일: 2021. 5. 27.

발 의 자:진성준·고용진·김정호

박상혁 · 소병훈 · 위성곤

윤준병 • 이규민 • 진선미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29개의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중 "제14조에"를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 장허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 의제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제18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 승인(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	
가・결정・지정・면허・협의・	
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산지관리법」 <u>제14조에</u>	18 <u>제6조에</u>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u>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u>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	<u>같은 법 제14조에</u>
卫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u>
	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

24. ~ 29. (생 략)

②・③ (생략)

연분묘의 개장허가

24. ~ 2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